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7. 11 선고 2023가단1010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선정당사자) C

변 론 종 결 2023. 6. 13.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사이에 체결된 양도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와 주식회사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2. 8. 18.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3. 선정자 D은 피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1% 지분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22. 9. 26. 접수 F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피고(선정당사자)는 주식회사 E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22. 8. 18. 접수 G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 3항 및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2. 9.

26.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채권 등

원고는 2020. 6. 10.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3,45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E은 위 대출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2022. 9. 23.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자동차 양도 등

1) 피고(선정당사자)는 E에 2,000만 원을 대여한 적이 있는데, 그 일부 변제로 E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이전받기로 하였다.

2) E과 피고(선정당사자)는 2022. 8. 18.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선정당사자)는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날 접수 G로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3)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E은 적극재산으로 공장용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는 있었으나 근저당권부채무와 기타 채무로 채무초과 상태였다.1) 4)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은 2022. 9. 26. 이 사건 자동차 중 1%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선정자 D은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 중 1% 지분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날 접수 F로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12호증, 을가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사이의 양도계약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과 함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사이의 양도계약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이고, 전득자를 상대로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을 구하면 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참조).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위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E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은 이 사건 양도계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채무초과 상태였던 E이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선정당사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E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전득자인 선정자 D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1) 선의항변의 요지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자동차를 대물변제 받았을 뿐이다.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은 원고와 E의 채권채무관계를 알지 못했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로써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 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피고(선정당사자)가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를 받았다는 것이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E이 차용금을 직접 변제하는 대신 대물변제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자력을 의심할만한 사정인 점, 선정자 D이 이 사건 자동차의 1%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선정당사자)나 선정자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의 선의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선정자 D은 피고(선정당사자)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E에 각 이 사건 자동차 또는 그 지분에 관하여 마친 명의이전등록에 대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사이의 양도계약 취소청구 부분: 각하

나. 나머지 청구 부분: 인용

판사 정왕현

선 정 자 명 단

1. C

2. D

끝.

별지목록

1.

등 록 번 호 :

제 원 관 리 번 호 : A01-1-00070-0050-1320

차 명 : 쏘렌토

차 종 : 승용 대형

차 대 번 호 :

원동기의 형식 및 연식 : D4HE / 2021

사 용 본 거 지(차고지) : 부산광역시 사상구 ,호

등 록 연 월 일 : 2020-06-15

1) 피고들이 이 부분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내용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이와 같이 인정한다.